거창군화장장사용조례폐지조례(안)

의안 번호 2002 - 32

제안년월일: 2002. 11.

제 안 자:사회복지과장

□ 폐지이유

- "거창군화장장사용조례"는 1982년6월29일 조례 제582호로 제정되고 1983년 8월 23일 조례 제702호, 1989년 8월 21일 조례 제1081호로 2회에 걸쳐 개정된 조례로서,
- 거창군 화장장은 거창읍 대동리 544-1(군유지)에 일제시대 지은 건축물 (목조스레이트)로서 노후화되어 있을뿐만 아니라, 내부 화로 1식도 모두 부식이 되어있는등 화장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또한 지금까지 전혀 사용치 않는 실정임.
 - ☆인근에 주민이 살고있어 미관상 흉물로 향후 철거 계획임.
- 2002년도 거창군의회 행정 사무 감사시도 거창군 화장장 사용 조례에 대한 폐지 요구가 있어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함.

□ 주요 골자

- 현행 "거창군화장장사용조례"를 폐지함.
-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.

□ 폐지근거

○ 거창군법무행정처리규정 제3조.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화장장사용조례폐지조례(안)

거창군화장장사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.